

빌라드아르떼 제주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분양사무실 운영방안 및 유의사항

■ 현장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입장 전 및 현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
- 현장방문시 안전등을 고려 사전 예약(064-738-7880)후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방문예약을 하지 않을시 현장 출입이 제한 됩니다.)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홍보관 방문 가능기간,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 상담전화,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청약자격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점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거주자가 (2021.12.02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시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자	2순위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회사 홈페이지(http://www.eomjihous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해당주택은 특별공급이 없는바,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체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참고하여 기재]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년 12월 12일(월)	2022년 12월 13일(화)	2022년 12월 19일(월)	2022년 12월 30일(금) ~ 2023년 01월 03일(화)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분양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평동659-3(현장내)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축과 - 80978호(2022. 12. 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659-3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지상4층 4개동,지하1층~지상3층 1개동,지상1층~지상3층 2개동,총7개동 36세대 중 일반분양 36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비 고 (타입별공급위치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2000864	01	167.9720	168	167.9720	17.2120	185.1840	69.3050	254.4890	375.6630	6	6	
		02	170.4960A	170A	170.4960	27.9190	198.4150	118.0150	316.4300	381.3090	8	8	
		03	170.4960B	170B	170.4960	27.9190	198.4150	118.0150	316.4300	381.3090	8	8	
		04	234.3600	234	234.3600	41.8510	276.2110	96.6960	372.9070	524.1370	6	6	
		05	242.0030A	242A	242.0030	42.8320	284.8350	167.5090	452.3440	541.2320	6	6	
		06	242.0030B	242B	242.0030	42.8320	284.8350	167.5090	452.3440	541.2320	2	2	
	합 계											36	36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4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사무실에 설치된 단지배치도,타입별 세대안내물 과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최하층 우선배정세대는 없으며, 층수에 관련된 사항은 모델01~02 1층, 모델03 2층, 모델04 2~3층 복층형, 모델05~06 3~4층 복층형입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표시 안내

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167.9720	170.4960 A	170.4960 B	234.3600	242.0030 A	242.0030 B
약식표기	168	170 A	170 B	234	242 A	242 B

■ 타입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표시	동	층	호수	공급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 (30%)	잔금 (50%)
					대지비	건축비	계	납입: 계약시 2022.12.30~2023.01.03	납입: 계약후 25일내 2023.01.26~2023.01.30	납입:계약후 45일내 2023.02.16~2023.02.20
168	E 동	1	E101,E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F 동	1	F101,F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G 동	1	G101,G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170 A	A 동	1	A101,A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B 동	1	B101,B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C 동	1	C101,C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170 B	D 동	1	D101,D102	2	900,594,500	1,084,405,500	1,985,000,000	397,000,000	595,500,000	992,500,000
	A 동	2	A201,A202	2	877,909,500	1,057,090,500	1,935,000,000	387,000,000	580,500,000	967,500,000
	B 동	2	B201,B202	2	877,909,500	1,057,090,500	1,935,000,000	387,000,000	580,500,000	967,500,000
234	C 동	2	C201,C202	2	877,909,500	1,057,090,500	1,935,000,000	387,000,000	580,500,000	967,500,000
	D 동	2	D201,D202	2	877,909,500	1,057,090,500	1,935,000,000	387,000,000	580,500,000	967,500,000
	E 동	2	E201,E202	2	1,324,804,000	1,595,196,000	2,920,000,000	584,000,000	876,000,000	1,460,000,000
242 A	F 동	2	F201,F202	2	1,324,804,000	1,595,196,000	2,920,000,000	584,000,000	876,000,000	1,460,000,000
	G 동	2	G201,G202	2	1,324,804,000	1,595,196,000	2,920,000,000	584,000,000	876,000,000	1,460,000,000
	A 동	3	A301,A302	2	1,352,026,000	1,627,974,000	2,980,000,000	596,000,000	894,000,000	1,490,000,000
242 B	B 동	3	B301,B302	2	1,352,026,000	1,627,974,000	2,980,000,000	596,000,000	894,000,000	1,490,000,000
	D 동	3	D301,D302	2	1,352,026,000	1,627,974,000	2,980,000,000	596,000,000	894,000,000	1,490,000,000
계				36						

■ 공통유의사항

- 분양가격 항목의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은 세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전 (세대 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라인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상 오류가 있을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 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취득세(등록세 통합),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된 금액이고, 기타 추가 품목의 견도 분양가 포함되어 사전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별도의 선택이 불가한사항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단 입주는 잔금납입 확인후 입주가능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해당금액이 미납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잔금의 일부본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됨)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금으로 산정되며,이에 대해 감면 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에 의거 해약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 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다른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여,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정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거주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제10조 제1항관련) (단위: 만원)

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0	300	250
102제곱미터 이하	300	600	400
135제곱미터 이하	400	1,000	700
모든 면적	500	1,500	1,000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2.12.12(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2.12.13(화)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청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청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원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발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정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신청자가 제주자치도 1년미만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2.12.19.(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2.30.(금)~2023.01.03.(화)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분양사무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659-3, 전화 : 064)738-7880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치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분양사무실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2.19.(월) ~ 2022.12.28 (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 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2.19 (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건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2.02.28.) 개정사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2.12.19.(월) ~ 2022.12.28.(수) - 제출시간 : 10:00 ~ 16:00
제출처	- 분양사무실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659-3(서귀포시 칠십리로285번길 19)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분양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안내(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공급 신청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상세)	세대원	▪ 공급신청자만 생업계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자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함.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 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의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추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본인 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에 “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분에 한함 ▪ 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 제출자는 제외)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계약 위임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특자는 대리인 계약불가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사업추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②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촉지역 3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 - 036 - 158510	신한자산신탁(주)배일규

- 계약금, 중도금(해당시),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해당시),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A201호 홍길동 → A2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분양사무실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해당시) 및 잔금일부분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중도금(해당시)과 잔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공동주택**의 분양 **중도금(해당시)**과 잔금 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신한은행)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 시화중앙금융센터지점)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 사전예약을통하여 일정을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1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행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등

■ 발코니 확장

- 본 공동주택은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공사완료됨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며,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주택형	발코니 확장부분	계약금액(기본확장형으로 시공후 분양함에따라 분양가에 포함)			비고
		계약금(계약시) 40%	잔금(입주시) 60%	합계	
168	거실 발코니 확장 시공, 침실1 발코니 확장시공	0	0	0	* 확장형발코니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170A,170B	침실2 발코니확장 시공	0	0	0	* 확장형발코니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34	복층하(2층) 침실2 발코니 확장 시공	0	0	0	* 확장형발코니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	복층하(3층) 침실2 발코니 확장 시공 복층상(4층) 침실2 발코니 확장 시공	0	0	0	* 확장형발코니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 타입별 빌트인 가전

- 본 공동주택은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되어 각 세대별로 설치후 분양됨에 따라 변경은 불가한 상태이며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입니다.

(단위: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설치위치	(분양가에 포함)			비고
			계약금(계약시) 40%	잔금(입주시) 60%	합계	
전 타입	빌트인냉장고(데이코)	주방	0	0	10,080,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냉동고(데이코)	주방	0	0	10,080,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오븐(데이코)	주방	0	0	3,024,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와인냉장고 (밀레)	주방	0	0	4,092,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식기세척기 (밀레)	주방	0	0	2,508,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인덕션 후드일체형 (밀레)	주방	0	0	5,412,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 김치냉장고(삼성)	다용도실 보조주방	0	0	1,29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세탁기(삼성 비스포크)	다용도실 보조주방	0	0	1,71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빌트인건조기(삼성 비스포크)	다용도실 보조주방	0	0	1,77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	아일랜드 싱글 스퀘어 후드(하츠)	다용도실 보조주방	0	0	612,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168,234	매립형 후드 (하츠)	다용도실 보조주방	0	0	612,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34	노출형 후드 (FALMEC)	3층 가족실 보조주방	0	0	3,45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에어드레서 (삼성 비스포크)	안방 드레스룸	0	0	1,608,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 타입	슈드레서(신발건조기) 삼성	현관 신발장	0	0	720,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234	빌트인냉장고(원택)	242A 복층상(4층):가족실 보조주방 242B 복층상(4층):가족실 보조주방 234 복층상(3층): 3층 가족실 보조주방	0	0	878,6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234	빌트인 인덕션(하츠)	242A,242B: 4층가족실보조주방 234: 3층 가족실 보조주방	0	0	225,4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234	빌트인 와인셀러(LG)	242A,242B: 4층가족실,	0	0	1,19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34		234: 3층 가족실	0	0	1,196,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234	55"OLED TV (LG)	242A,242B: 4층침실2,가족실, 침실1,가족실	0	0	2,032,2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타입	65"OLED TV (LG)	안방	0	0	3,063,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타입	77"OLED TV (LG)	거실	0	0	5,755,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170A,170B	시스템 에어컨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0	0	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42A,242B		복층하(3층):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복층상(4층): 가족실, 침실1, 침실2	0	0	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168		거실, 주방, 식당, 침실1, CLAATLF2, 한실	0	0	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34		복층하(2층): 거실, 주방, 침실1 복층상(3층): 가족실, 침실1, 한실	0	0	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전타입	스마트 미러	안방욕실 세면대 전면거울면 매입설치	0	0	2,280,000	* 빌트인 가전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 및 점검에 필요한 점검구가 설치됨.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됨.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용량은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되며, 설치되는 실내기외에 추가로 실내기를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및 에어컨 개별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과부하로 정상운전 시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계약 시 입주예정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개별 요구조건 등으로 교체는 불가함.
- 평형별 추가선택 품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각타입별 세대에는 추가선택 품목을 포함하여 건립되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가구

- 각타입별로 가구선택품목은 아래표와 같이 설치되며,공사가완료된상태로서 변경불가한 항목임.

1) 168

구분 주택형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1		드레스룸2	복도		침실2	침실3	계약금액(분양가에 포함)			비고	
	TV장	소파	티데이 이불	메인주방 벽면장	벽면주방 수납장	아일랜드 주방	식탁	벽면장	선반장	유리문	선반장	복도 낮은장	침실3 전면	벽면장	벽면장	계약시 40%	입주시 60%		합계
168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0	0	116,330,000	* 기본품목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2) 170A,170B

구분 주택형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1	드레스룸2	침실2	침실3	계약금액(분양가에 포함)			비고					
	TV장	소파	티데이 이불	메인주방 벽면장	벽면주방 수납장	아일랜드 주방	식탁	벽면장	선반장	유리문	선반장		벽면장	벽면장	계약시 40%	입주시 60%	합계
170A,170B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0	0	157,437,500	* 기본품목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3) 234

/주택 형	하층 거실			하층 주방			하층 다용도실	하층 드레스룸1		하층침실1		계약금액(분양가에 포함)			비고	
	TV장	소파	티데이 이불	메인벽면 주방장	아일랜드 주방	식탁	상층가족실	상층드레스룸		상층침실1	상층침실2	계약시 40%	입주시 60%	합계		
							벽면보조주방	선반장	유리문	선반장						
234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기본	0	0	172,090,000	* 기본품목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기본							
--	--	--	--	--	--	--	----	----	----	----	---	----	--	--	--	--	--	--	--

4) 242A,242B

/주택형	거실			하층 주방				하층 다용도실	하층 드레스룸1		하층 드레스룸2	하층 침실2		계약금액(분양가에 포함)			비고
	TV장	소파	티테이블	메인벽면 주방장	벽면주방 수납장	아일랜드 주방	식탁	상층가족실	상층드레스룸		상층침실1	상층침실2		계약시 40%	입주시 60%	합계	
								보조주방장 셀프바	선반장	유리문	선반장	벽면장					
242A,242B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0	0	177,187,500	* 기본품목으로 공사완료된 상태로 변경불가

• 현관중문은 현관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이 주택형마다 상이하하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확인하시기 바람.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분양사무실 내 분양홍보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식재,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여건사항

- 각 주택형별 세대의 배치 및 층수 등에 따라 인접 건물 및 각종 시설로 인해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고, 각 주택형별 및 층수별 분양가 차등은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적이 조정된 결과이며,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 상 각 라인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방향 및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 내 홍보물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현장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 집기 및 마감재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옥탑과 지붕에는 태양광설비(C동1호라인), 공동시청 안테나, 피뢰침, 환기, 배수,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단 1층 세대의 전면부분은 사생활보호 등으로 1층세대에서 사용함.
- 엘리베이터, 중앙광장, 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클린하우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자전거 보관대 등의 위치 는 소음 및 냄새등이 발생할수 있음.
-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승인도서 및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저층부 석재, 집입계단 및 캐노피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 배기용 DRY AREA가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현장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샘플세대)에 설치된 급/배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배수관, 점검구의 제품사양과 위치는 실제 시공시 신설 및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의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계획, 사인계획은 색채, 입면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하여 시공, 반영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샘플세대)을 설치하지 않는 타입은 분양홍보사무실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단위세대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도로, 일조, 진입로 등), 주변 건축물 현황 및 개발계획, 조망권,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공동 사용하고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관리운영업체 선정 및 주차장 관리 여건에 따라 주차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부 바닥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및 빌라드 아르떼 B1, 단지사인, 시설물사인 등 각종 사인계획은 인허가, 법규의 변경, 현장 여건, 디자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저층부 및 일부 타입(라인)은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고 저층부와 상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해 위치, 형태,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부대 복리시설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차로폭은 6.9m(연석포함)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량등의 진입이 불가함.(추후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차로폭으로 인하여 차단기 설치유무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C동 자봉층 상부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형태, 크기, 디자인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클린하우스(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D.A가 설치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배출된 공기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음.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적현황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단지배치, 주동위치, 도로선형, 조경(수목,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각종 인쇄물과 사업승인 도서상의 구축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 면적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A동과 B동 북측면의 경계선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표시한 결과, 경계 돌담이'빌라드아르떼'와 토평동 658번지 사이 경계보다 일부는 안쪽으로 일부는 밖으로 시공되어 인접지의 기존 돌담을 유지한 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기에 현 경계 돌담이 토지 경계보다 일부 내측, 일부 외측으로 시공되었음.
- C동과 D동 북측면의 경계선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표시한 결과, 경계 돌담이'빌라드아르떼'와 토평동 654-1, 684 번지 사이 경계보다 안쪽으로 시공되어 인접지에 기존 농사 시설물과 골나뭇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되어 현 경계 돌담이 토지 경계보다 내측으로 시공되었음.
- 단지의 동측면의(D동과E동측면) 농로에 토평동661-1, 682, 683에 연결하여 과거부터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 현황도로가 점유되어 있고 기존 공공이 활용하는 도로를 막을수가 없어서, 기존 도로 상태를 유지하여 연립주택건설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추후에도 현황 도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로 유지될것임.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 본공동주택 각단지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진행중 일부 변동될수 있으며,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이 시설물(공용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의 인승,탐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고 시공시 변경 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A동~D동은 엘리베와 계단실이 주차장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E동~G동은 광장지하주차장에서 주차후 외부공간을 (도로 및 인도)통하여 세대로 진입하도록 뒀을 확인 합니다.
- 단지내 B동~D동 주차장 전면 지하공간에 주민편의시설(다목적룸,영상룸,운동시설,당구장,골프연습장) 은 457.2200 m2, 추후 관리부분은 면적당배분하여 세대관리비에 포함한다.
- 경비실과 기계실,전기실부분은 G동 지하와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으며 공동의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공간임을 확인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세대 간에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속도 등은 법적기준내 에 설치되었으며,별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입구의 차량진출입은 경비실에서 통제 관리 되어있으며, 사전등록된차량을 자동으로 개폐하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주차장관련 >

- A동~D동 지하주차장 : 진입로 폭은 6.3M, 높이 2.7M

- 중앙광장 주차장: 진입로폭 6.3M, 집입로높이 2.3M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바닥은 지형적인 문제로 내부에 일부 경사도가 설치되고, 경사로부분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장의 일부공간에는 환기를 위하여 천정부분에 노출되어 일부 빗물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시 일괄로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공사진행과정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주동(A~D동 지하1층 E/V홀에 세대 창고가 설치되며 세대별로 설치위치, 면적 등이 상이하니 청약전에 분양사무실과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차 충전설비(완속)는 지하1층에 8개소,광장 지하주차장에 4개소 설치되었고 추후 위치변경등에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건물 내외부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입주자는 추가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대리석류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 할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음.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A~D동 전체세대,E~G동1층세대는 세대내 보일러실에 설치되며, E~G동2층세대는 별도 실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에어컨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A~D동(3층4층 북층세대 의 3층,4층),E~G동 2층3층 북층세대 의 3층) 유사시 비상대피를 위한 완강기, 디딤판 등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완강기를 이용한 비상대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 창호 열림방향이 견본주택과 상이하니 청약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 및 설치업체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주방에 설치되는 천역대리석 및 세라믹타일 은 이음매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상판 이음매가 추가되거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욕실내 샤워실,변기공간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입면에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 우수 및 급배수 관로 등이 설치되며 분양용 C.G에는 표현하지 않음.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각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계약면적과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시 확정측량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로도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로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전에 분양사무실과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측과의 협의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LPG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탱크가 부지 내 설치되며, 차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들에게 있음.

-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축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색채계획, 석재, 목재널 등 외부마감 줄눈계획, 테라스 옹벽 및 난간 등) 등의 형태, 사이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외벽의 패턴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층 설계 계획상 지하주차장과 세대 E.V출,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세대는 각동 간의 단차로 인하여 이동 동선이 길어질 수 있으니 청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클린하우스 등의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를 청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천장고는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 및 시공오차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천장고에 따라 설치되는 창호, 가구 등의 크기, 형태, 디자인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천장고는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이 상이하며, 다용도실 천장고는 층별, 세대별로 상이하니 청약전에 분양사무실과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에는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등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바닥에 사용되는 타일, 마루자재는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샘플하우스)에 설치된 마감재, 가전제품, 기전시스템, 창호류, 가구류(악세사리, 하드웨어 포함), 위생도기, 수전 등의 경우 사용승인시 인증제품에 적합한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세탁실 및 발코니 등에 결로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환기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람.
- 외벽 및 세대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발코니)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천연석, 무늬목 등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 이색, 균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샘플세대)과 상이할 수 있음.
- 전기세대분전반, 통신세대단자함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분양가에 포함된 무상제공 가전제품 등의 A/S는 “을”이 제조사에 직접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사에게 요청 및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기타 공유부분의 창호크기, 형태 및 일부 마감재, 공용부분의 층고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유의 바람.
- 각종 창호류 (방화문 포함) 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로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분양사무실 및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샘플세대)을 우선으로 함.)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거실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샘플세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된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계약자가 별도 희망하는 용량(규격) 은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제품모델,수량)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의 벽체는 기존옹벽부분에 경량벽체 조성으로 장식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정물이 필요하며, 타공시 파손이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엄지하우스가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엄지하우스이고, 신한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주)엄지하우스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신탁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엄지하우스와 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엄지하우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된다.」
- 「매수인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신한자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신한자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신한자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엄지하우스에게 있다.)
- 매수인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체결된 각종 개별계약(위탁자 및/또는 분양대행사와 매수인간의 임대계약, 수익보장, 계약해제합의, 환매계약, 할인분양, 대물변제 등)에 대해서 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제29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 본주택은 - 녹색건축 인증: 일반(그린4등급), 인증번호(G-SEED-C-2022-0679-5),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유효기간(2022.11.03~2027.11.02)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 1++등급, 인증번호(22-주-본-1+-0038),인증기관(한국부동산원/한국에너지공단),유효기간(~ 2032.08.18)
- 첨부1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빌라 드 아르떼 건축주 : (주)엄지하우스 준공(예정)일 : 2022.10.04.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85번길 19 층수 :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 12,446.0080㎡ (평가 연면적: 12,446.0080㎡)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이안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주)엄지하우스 공사감리자 :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C-2022-0679-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1.03. ~ 2027.11.02. 인증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19.09.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1월 03일

한국부동산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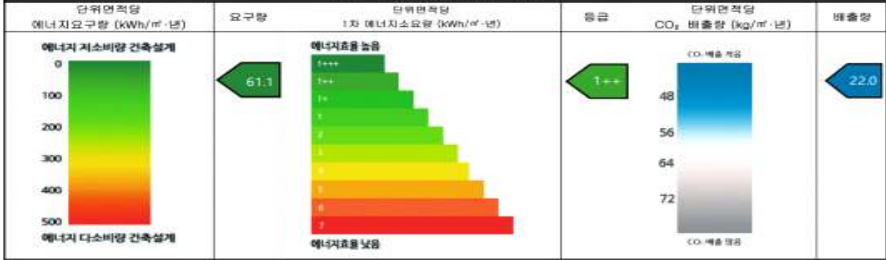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빌라 드 아르떼 준공연도 : 20220830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85번길 19 층수 :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 12446.008(㎡)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이안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 (주)엄지하우스 공사감리자 : (주)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2-주-본-1+-0038 평가자 : 박한결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2032-08-18 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4.0	42.9	32.3	9.9
급탕	30.7	33.8	24.9	7.7
조명	6.4	5.9	16.3	2.8
환기		3.3	9.1	1.6
합계	61.1	85.9	82.6	22.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 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2022년 08월 18일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명: 서귀포시 토평동 659-3 주택건설사업 :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사업주체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13층 (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110111-3543801 개발업등록 서울특별시-080061	
위탁자,시공자	주식회사 엄지하우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8길 25 (역삼동)	110111-0427074 건설업등록번호: 01-2559	
설계자(건축)	이안건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1,10층 1003호(논현동,파크랜드빌딩)	214-08-45348	
설계자 (소규모 환경심의/도시계획심의/토목)	㈜정이엔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길 73-1(오라이동)	220111-0120089	
감리자(건축)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74 (역삼동)	110111-1015076	감리비: ₩670,762,400(부가세포함)
감리자(전기,정보통신)	㈜아성기술단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62번길3	224111-0013644	전기감리비: ₩29,040,000(부가세포함) 정보통신감리비: ₩25,500,000(부가세포함)
감리자(소방)	㈜아성기술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62번길3	224111-0013644	소방감리비: ₩ 27,600,000(부가세포함)
연대보증시공사	삼정건설산업(주)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313호 (가산동,에이스가산타워)	120111-0758477 건설업등록번호: 01-0518	
	㈜백림종합건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42 4층(수유동,4층)	110111-4377580 건설업등록번호: 01-2930	

▣ 분양사무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659-3

▣ 분양문의 : 064) 738-7880 (사전예약 필수)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